

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2.  
제안자 : 안산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대단위 고층 아파트와, 다가구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월피동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운영동 분동 승인에 따라 1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

기관명	소재지
부곡동	안산시 부곡동 671-4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 6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제 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, 면,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

설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있어서는 그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
. 제2항 -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소요예산

##### ○ 없음

#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소재지) "별표" 중 "월피동"을 "부곡동"과 "월피동"으로 하고  
"부곡동"의 소재지는 각각 "별지"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 별 표 )

## 시 청 및 동 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
부곡동	안산시 부곡동 671-4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개 정 (안)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안산시청	( 생 략 )	안산시청	( 현 행 과 같 음 )
일동 ~ 본오2동	( 생 략 )	일동 ~ 본오 2동	( 현 행 과 같 음 )
	( 신 설 )	부곡동	안산시 부곡동 671-4
월피동~ 대부동	( 생 략 )	월피동~ 대부동	( 현 행 과 같 음 )